등록번호	자치행정과-2857
등록일자	2015.2.25.
결재일자	2015.2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윤경희	천현순	권철회	이제영	전결 02/26 김찬곤
iBi				
조				

2015년 모범구민 표창계획



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



2015년 모범구민 표창계획

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구민들을 발굴·표창함으로써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
- ※ 2011.12.30.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(1988년 제정)을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통합 운영

Ⅱ 추진방향

- 다양한 매체·기관을 통한 모집홍보로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
- 구정 주요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관련 표창대상자의 적극 발굴
- 표창대상자 추천·선정시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
- 수상자 공적에 대한 스토리 홍보를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일반인의 공감과 참여 유도

Ⅲ 표창개요

시 기 : 연 2회(상·하반기)

표창훈격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대 상:연 100명 내외

- 상하반기 각 50명

-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원 조절

※ 연도별 표창내역(2010년~2014년)

구 분	2014년도	2013년도	2012년도	2011년도	2010년도
계	122명	117명	90명	173명	0명
상반기	49명	68명	45명	99명	미시행 ·(선거일 전 1년
하반기	73명	49명	45명	74명	제한사항)

- 신청자격 :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공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
 최근 2년 이내 구청장 표창 이력이 없는 자
 - 어려운 이웃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
 -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 -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공이 현저한 자 등
 - ※ <u>통·반장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구청장 표창이 있는 자를 제외</u>하며, 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 제한기간을 예외적 으로 미적용할 수 있음
- 방 법 : 별도 수여식에 의한 표창장 수여(부상 없음)
 - ※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(기부행위의 정의)과 관련, 부상수여 불가

● 표창제한

- 법령 등에 따른 부적격자
 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
 -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
 -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
- 일반적인 추천제한
 - •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(중구 표창 조례 제14조)
 -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
 - •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, 순서대로,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
 -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것으로 작성하거나 허위·과장한 경우

절 차



※ 중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(중구 표창 조례 제11조, 제12조)

• 심사위원 : 7명(부구청장 외 국장급 6명)

• 심사·의결 :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·의결(서면의결 가능)

IV 소요예산

🤍 금 액 : 996천원

예산과목 : 자치행정과, 주민자치기반강화, 자치행정강화, 주민화합

행정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V 향후일정

상반기 모범구민 표창

- 표창대상자 추천·심사 : 2015. 3. 31.까지

- 표창장 수여식 개최 : 2015. 4. 중

상반기 모범구민 표창

- 표창대상자 추천·심사 : 2015. 10. 30.까지

- 표창장 수여식 개최 : 2015. 11. 중

※ 표창시기별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여 공문 시행

VI 행정사항

※ 붙임: 1. 표창장(안) 1부.

2. 공적조서 양식 1부. 끝.